특정감사

감사결과 처분요구서

- 시설공사 하자관련 특정감사 -

2020. 10.

경상북도
GYEONGSANGBUK-DO

1. 처분요구사항 일람표

(단위 : 천원, 명)

일련번호	소 관	건 명	처 분 요 구		
			처분종류	재 정 상 조치금액	신 분 상 조치인원
1	영주시 ◪◪과	@@@ $$$$$$$ 조성사업 하자 미조치	시정	-	-

2.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

연번	제 목	관 련 자			문 책	비 고
		소 속	직위(직급)	성 명		
1	@@@ $$$$$$$ 조성사업 하자 미조치				-	

3. 처분요구일람표

1) @@@ $$$$$$$ 조성사업 하자 미조치 (시정) ····· 5

일련번호	1	감사자	시설6급 김상태		공개(○), 비공개( )
신분상 조치인원		재정상 조치방법		재정상 조치금액	
수감부서(처리부서)	영주시 ◪◪과	처분요구일자		회신기일	

경 상 북 도

시 정 요 구

제 목 **@@@ $$$$$$$ 조성사업 하자 미조치**

소 관 청 영주시

관 계 부 서 ◪◪과

내 용

영주시 ◪◪과에서는 '@@@ $$$$$$$ 조성사업 수변공원1, 2 조성공사'로 건립된 전망대 및 카페테리아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,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또한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,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.

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

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영주시 ◪◪과에서는 2019년 8월 30일 준공 된 '전망대 및 카페테리아'를 관리하면서 2020년 8월 14일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계약상대자 입회 없이 일방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였다.

또한,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'이상 없음'으로 결과 처리를 하였으나 2020년 9월 10일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 결과 아래 [사진]과 같이 전망대 외부등 누수, 난간 도장 및 계단 마감재 이탈과 카페테리아 벽면 누수, 계단 도장 및 천정재 마감 불량 등 하자가 발생되어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하자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[사진] 전망대 및 카페테리아 하자 현황

		
전망대 외부등 누수	전망대 난간 도장 불량	전망대 계단 마감재 이탈
		
카페테리아 2층 벽면 누수	카페테리아 내부계단 도장 불량	카페테리아 천정재 마감 불량

조치할 사항 **영주시장은**

①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

만전을 기하기 바라고

② 또한, 시설물 관리업무 전반적 사항에 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,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